

5. 기타 참고자료

가. 근거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29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 '93. 5. 30~6. 5(7일간)
- 방법 : 대구직할시 공보 제76호에 공고
- 공고 : 대구직할시 공고 제1993-87호

8. 大邱直轄市觀光工藝品및産業디자인開發育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 審査過程

- 回附日字 : 1993年 6月 11日
- 提出者 : 大邱直轄市長(地域經濟局長)
- 上程日字 : 1993年 6月 16日

(第21回 大邱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産業委員會)

2. 提案說明의 要旨(地域經濟局長 曹琪鉉)

가. 提案理由

- 社會的 變化에 따라 現實에 부적합한 用語를 修正·補完하고,
- 不必要하고 機能이 유사한 各種 委員會의 統·廢合 및 廢止 方針에 따라 專門性이 결여된 運營委員會를 廢止하여 行政 遂行에 迅速과 能率을 기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現實에 不適合한 用語整理
 - “지방산업진흥과 수출증대”→“지방산업진흥과 소득 및 수출증대”(案제1조)
 - “일정한 지역의 특유한 원자재”→“특유한 원자재”(案 제2조)
 - “생산장려금 지원및 융자알선”→“개발및 생산장려금의 지원 또는 융자알선”(案 제12조)
- 專門性이 缺如된 運營委員會 廢止(案第18~24條)

3. 檢討報告의 要旨(專門委員 尹桂東)

- 今回에 改正되는 條例案의 主要內容은, 産業 및 經濟用語들中 社會가 變化됨에 따라 現實에 不適合한 用語들을 修正·補完하는 한편
- 委員會로서 機能이 類似하거나 關係機關의 協議만으로도 그 機能이 充分한 各種 委員會를 統合·廢止한다는 方針에 따라 그동안 運營實績이 극히 未洽하였던 觀光工藝品 및 産業디자인 전람회 運營委員會는 專門機關 및 團體와의 協議·推薦으로도 充分히 그 機能을 다할 수 있을 것이므로, 委員會를 廢止한다는 本 案에 異見이 없음.

4. 質疑 및 答辯要旨

質 疑	答 辯
○ 관광공예품 생산지원시 학교, 교수등에만 국한하지 말고 민간 생산업자에게도 지원방안 강구 하고 지역에서 기능경진대회등 이 개최될수 있도록 방안강구	○ '94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토 록 하겠음
○ 기능보유자가 공지를 가지고 공예품을 발굴 제작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함	○ 기능보유자 관리에 중점토록 하 겠음

5. 討論事項 : 없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만장일치)
7. 新·舊條文 對比表 및 根據法令 : 別添

以上으로 大邱直轄市 觀光工藝品 및 産業디자인 開發育成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대구직할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각종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하고 지방산업 진흥과 소득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2. 5. 28 조례 제1572호로 제정하여 그동안 3차례의 개정을 한 후 시행하여 왔으나
-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현실에 부적합한 용어를 보완하고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폐지방침에 따라 조례 제18조(위원회 설치)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전문성을 결비한 상공회의소와 공예공업협동조합 내지 관내실정에 밝은 구청장의 추천만으로 목적달성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수행에 신속과 능률을 기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중소기업진흥법 제34조

3. 주요골자

- 제1조중 “지방산업 진흥과 수출증대”를 “지방산업 진흥과 소득 및 수출증대”로 한다.
- 제2조 제1호중 “일정한 지역의 특유한 원자재”를 “특유한 원자재”로 한다.
- 제12조 제3호중 “생산장려금의 지원 및 용자알선”을 “개발 및 생산장려금의 지원 또는 용자알선”으로 한다. 제8호 전람회 또는 경진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를 삽입한다.